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6 글로벌 웹툰 IP 제작지원 ○ 사업목적 : 만화웹툰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2026.12.31.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웹툰 개발/제작 경험이 있거나 개발/제작할 능력이 있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 ○ 지원 규모 : 2개사 내외(과제별 최대 330백만원, 초과 비용 자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체열회사에 속하는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기부담금(현금) 편성 필수 ○ 지원 내용 : 글로벌 웹툰 IP 제작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범위 내 자유롭게 예산 구성(세부 항목 사업신청서 및 안내서 확인) - 사업비 편성 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웹툰 제작을 위한 직접비용으로 편성해야 함 - 접수,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작품 수 및 예산 조정(감액)될 수 있음 ※ [참고] 우수 과제 후속 지원 : 26글로벌웹툰IP제작지원 사업 결과 평가점수 상위 5개 과제에 포상금 각 10백만원 지급 예정 ○ 지원 조건 및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차 공고(공고명: 2026 글로벌 웹툰 IP 제작 지원)에서 선정되어 협약체결 한 기업은 지원 불가 - 모든 과제는 협약 기간 내 작품당 10화 이상 개발 완료하여야 함(1화당 50컷 이상 기준) - 별도 원작이 있는 작품은 IP 권리 사용 허가서 등 원작 IP 사용에 관한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함 - 국제 공동 제작 작품의 경우 작품 IP에 대한 한국의 일부 또는 전체 지분을 보유해야 함(증빙 제출) - 과제(주관기관)당 신청 작품 수 제한 없음 : 과제신청서는 1개만 제출 -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플랫폼 업로드를 예정하는 작품 지원 불가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은 최대 1개까지만 가능 			
신청서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05.22.(금)~06.05.(금) 11:00 AM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기한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 ※ 컨소시엄으로 접수 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컨소시엄 불인정)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CCA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등 서류 작성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 - 제출(업로드) 후 Windows OS 환경에서 다운로드 및 압축 해제 확인 필수(Mac OS에서 압축한 파일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오류로 인해 파일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출자 책임으로 간주함)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사업안내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01~10)	제출 형식	비고
필수	01 과제 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현황	XLSX	
필수	02 사업신청서	PDF	(해당 시) 일자리 창출 계획 포함
필수	03 작품별 웹툰 원고 샘플 (각 2화 이내)	PDF 또는 폴더	복수 작품 신청 시 작품 수만큼 제출, 완성고 아닌 콘티도 가능
필수	04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PDF	주관참여 각 1부
필수	0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자필 서명 필수
필수	06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XLSX	
필수	07 사업자등록증	PDF	주관/참여 각 1부

구분	제출 서류 (01~10)	제출 형식	비고
선택	07-1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참여 각각
선택	08-1 플랫폼연재의향서 또는 유통의향서	PDF	자유 양식
선택	08-2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PDF	자유 양식
선택	09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	PDF 또는 폴더	자유 양식(해외작품, 별도 원작 있는 경우)
선택	10 기타 과제 이해를 돕는 자료	PDF 또는 폴더	자유 양식

※ 위 제출 서류를 1개 폴더로 정리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용량 제한 50MB)에 압축파일 1개로 업로드**

- 압축파일명 : 26글로벌웹툰IP제작_주관기관명.zip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항목이 0점 처리 될 수 있으며,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평가대상 제외 기준

- 공고 내 제출 서류 목록 중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내용상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 불성실 작성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참여인력 또는 동의 여부가 누락된 경우 ※ 기재 내용의 공신력 및 효력 없음, 미제출로 간주
- 직접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에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일부가 누락된 경우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 절차

구분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발표평가	사업비 종합 심의	협약체결
평가 방법	• 과제신청서 평가 •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발표 및 질의응답 • 통과 기준 : 70점 이상	종합 점수 고득점순 예산 범위 내 선정	심의 결과 반영 및 협약 진행 (후 순위 별도 선정)
선정 규모	지원 규모 3배수 이내	후 순위 포함 2배수 이내	협약 대상 확정	
가중치	40%	60%	100%	
일정(안)	6월 3주	6월 4주	7월 1주	
			7월 3주	

- 평가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종합 점수 동점자 발생 시 ① 발표평가 고득점, ②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고득점순 우선순위 부여
- 점수,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수, 과제별 사업예산, 지원 작품 수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 서류 평가(102점) : 작품기획력(30), 수행기관(15), 참여인력/작가(30), 사업비(10), 기대 성과(15), 가점(2)

평가 항목	평가지표	내용	점수
작품 기획력 (30)	사업이해도	사업목적과 과제의 부합성	30
	수요·시장 분석	수요자·시장 규모·경쟁환경 분석의 타당성	
	경쟁력	비교 우위 요소(IP, 기술, 파트너십 등) 보유 및 활용 가능성	
	달성 가능성	달성 목표·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수행기관 (15)	기관 전문성·실적	유사 과제 수행 경험, 조직 역량	15
	관리 체계성	조직 구성, 관리 안정성·체계성	
	기관 인프라	장비·시스템·스튜디오 등 보유 인프라	
참여인력 /작가(30)	전문성	유사 과제 경력 및 포트폴리오	30
	참여율	적정 인력 구성/배치, 인력별 참여율 및 참여 기간 적정성	
사업비 (10)	사업비 규모	사업비(국고·자부담) 규모 적정성	10
	편성 내역	세목별 산출 근거 및 적합성·합리성	
	자부담금 조달계획	조달계획의 구체성·현실성	
기대 성과 (15)	성과 목표	성과 목표의 구체성, 측정 및 달성 가능성	15
	시장성	예상 수요 및 매출·수출 규모	
	IP 확장성	보유 IP(제작 결과물 포함)의 지속성 및 확장성(OSMU)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가치 및 영향력	
소계			100
가점 (2)		플랫폼 연재 의향서 또는 유통 의향서 *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후 업로드 예정하는 작품에 해당	2
합계			102

- 발표평가(100점) : 작품기획력(30), 수행기관(20), 참여인력/작가(23), 기대 성과(25), ESG(2)

평가 항목	평가지표	내용	점수
작품 기획력 (30)	수요·시장 분석	수요자·시장 규모·경쟁환경 분석의 타당성	30
	작품성 및 완성도	기획의 완성도·예술성·일관성	
	대중성	대중 공감 가능성, 파급력·수용성	
수행기관 (20)	기관 전문성·실적	유사 과제 수행 경험, 조직 역량	20
	협업 역량	외부 협업 체계 마련 여부(협력사·인력 등)	
	추진 의지	과제 책임자의 수행 의지·충실도	
참여인력 /작가(23)	전문성	유사 과제 경력 및 포트폴리오	23
	참여율	적정 인력 구성/배치, 인력별 참여율 및 참여 기간 적정성	
기대 성과 (25)	IP 확장성	보유 IP(제작 결과물 포함)의 지속성 및 확장성(OSMU)	25
	투자유치 가능성	기대 투자유치 목표 및 준비 정도	
	해외 진출 가능성	해외 진출 전략 및 현지화 계획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가치 및 영향력	
ESG (2)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계획 *고용 형태, 수행업무, 참여 기간, 참여율, 인원수 등 ※ 제출 1점, 미제출 혹은 제출 내용 미흡 0점 *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중간/결과 보고 시 인력 채용에 활용한 표 준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 확인 예정	2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제출 *결과보고서 및 평가를 통해 활용 여부 확인 ※ 제출 1점, 미제출 0점	
합계			100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 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 만화웹툰산업팀 신재은 과장(☎061-900-6437, yonnana@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안내사항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 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 서류 목록 중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 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 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 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 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에 의거 하여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에 의거 하여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 과제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 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 평가에 반영 예정(증빙은 표준계약서로 하며,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 필요)
- 표준계약서 활용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 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하여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 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에 의거 하여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 보조사업 수행 단계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성폭력 신고 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 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성희롱 예방 교육의 인정 범위 : 당해 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 의무교육, 해외 타 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 등(단, 당해 연도 실시 및 법정 교육 내용)

콘텐츠금융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 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